



「2025년 카페·베이커리 창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SPC행복한재단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공간,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5년 카페·베이커리 창업지원」 사업을 공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16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카페·베이커리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교육·공간·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5. 4. 16. ~ ‘25. 12. 11. (9개월 내외)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3년 미만 초기창업자

※ 단, 신청자는 반드시 카페 또는 베이커리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유지 해야 함

□ 선정규모 : 3개사 내외

※ 단, 지원규모는 기업별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창업 실무교육, 공간, 자금을 패키지로 최대 1.6억 한도 일괄지원

① 점포 보증금 지원

점포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최장 5년간 지원

+

② 사업화 자금

내외부 개보수, 기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 최대 3천만원 한도 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4.16.(수요일) ~ 5.16.(금요일)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내방·등기우편·이메일 접수

| 접수처 | |
|------|---|
| 주소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
| 접수메일 | changup1@debc.or.kr * 25년도_창업, 행복패키지 지원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
| 전화 | 02-2181-6522, 02-2181-6573 |

* 이메일 발송 후 센터측에 서류접수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자격 : 2025. 1. 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 창업자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 시각장애인교육)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절차 | 방법 |
|-----------|--|
| 온라인 교육 신청 |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 역량강화, 재기창업, 협동조합, 시각장애인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 온라인 교육 수강 |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시각장애인 교육으로 5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
| 수료증 발급 | http://start.debc.or.kr 마이페이지 로그인하여 설문조사 완료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 공통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센터제출용, 신용회사제출용) | <p>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p>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p>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p>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p>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 첫 창업(창업경험無)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예비창업(창업경험 有) - 사실증명2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총사업자 등록내역 각 1부) | <p>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소</p> |
| 업종 전환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p>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소</p> |
| 초기 창업 (필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확인서 | |
| 해당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재권 등) ▪ 센터 주관 창업경진대회 상장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첨부파일 3> 개인신용정보 제공 위임장 (대리인 작성 시 필요) | |
| | | <p>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p> |
| | | <p>개별 사본 제출</p> |
| | | <p>개별 사본 제출</p> |
| | | <p>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p> |
| | | <p>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p> |

□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센터에서 사업화지원 및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자
- 모집공고일 이후 폐업한 자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사업화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3 점포 세부 지원내용

□ (보증금 지원) 창업점포 보증금 1억 3천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특수관계*일 경우 지원 불가(민법상의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를 준용)
- 협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 점포 계약
 - *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4 사업화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사업화 자금 3천 한도 내 실비지원(VAT 미포함)

< 주요 집행비목 >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매장 리모델링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외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
| 브랜드 개발 | CI·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 마케팅 홍보 | 판로개척·고객확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
| 홈페이지·어플리케이션 | 선정된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관련 제품(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집기구입비 | 사업장 내 집기,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비용(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포함) |
| 폐업지원비용 | 폐업 후 사업정리(점포철거 등), 구조물 원상복구 작업비용(한도 300만원) |

* 일회성 소모품비, 중고시설 및 물품, 사실 확인 등이 어려운 일반용역은 지원이 어려움



<사업비 지급 신청 및 교부절차>

| 단 계 | 내 용 |
|-----------------------|--|
| 사업비 선 집행(자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신청서 상의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자비 부담으로 선 집행 |
| ↓ 완료보고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자는 개선사업 완료료 양식에 맞게 보고하며, 동시에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완료일로부터 1주 내) |
| ↓ 교부 신청에 대한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교부 신청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시 확정통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불인정 통보 ■ 불인정 통보의 경우 센터는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이의신청이 가능 |
| ↓ 최종 사업비 교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확정된 사업비 교부(최종 확정일 14일내, 최대 2회) |

< 정산증빙서류 >

| 구분 | 서류명 | 구비요건 |
|-----------|---------------|---|
| 공통(필수) | 완료보고서 |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서식 배포 예정 |
| | 통장사본 | 지원금을 교부받을 통장사본 |
| | 견적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0만원 이상 거래 시 비교견적서 포함 2. 거래처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
| | 계약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자와 거래처 간 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2. 단순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카드거래 시 | 카드 사용 영수증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2.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 |
| | (전자)세금계산서 | 1. 전자세금계산서 |
| 계좌이체 거래 시 | 거래처 통장 사본 | 1. 통장 앞면(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확인용) |
|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이체확인증 | 1.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
| 필요 시 | 기타 증빙서류 |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

5 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text{평가점수}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수} - 2}$$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 (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text{최종점수} = \text{서류심사} * 0.3(30\%) + \text{심층면접심사} * 0.7(70\%)$$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면접평가)

| 구분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
| 서류 심사 | 정량 · 정성 | 신청자 환경 및 신용 | 20점 |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 신용상태 |
| | | 사업계획의 적합성 | 50점 | 입지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 고객분석, 실현가능성 |
| | | 자금계획의 구체성 | 30점 | 자금사용계획의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 적정성 |
| | | 가점 | 각2점 | 중증, 저소득, 청년, 여성, 센터 주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
| 발표 심사 | 정성 | 신청자 역량 및 기술 | 30점 |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창업가능성 |
| | | 아이템 가능성 | 20점 |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
| | | 시장조사·운영방안 | 20점 |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도와 운영방안 등 |
| | | 소요자금 조달계획 | 15점 |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 |
| | | 사업 위험분석 | 15점 | 사업·아이템의 수익 수준,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

6

추진절차

| 단 계 | 일 정 | 내 용 |
|------------------------|-------------------|---|
| 신청·접수 | 4.16.(수)~5.16.(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방 및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 |
| 기초서류심사 | 5.26.(월)~5.27.(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6.4.(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 심층면접심사 | 6.12.(목)~6.13.(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
| 최종 합격자 발표 | 6.18.(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진위여부 등을 위한 추가 검증 통해 합격자 발표 |
| 협약체결 | 6.24.(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
| 교육·멘토링 | 미정 (추후 별도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을 위한 실습교육, 멘토링(상권분석 등) |
|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및 감정평가 | 6.24.(화)~8.23.(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 점포 계약체결 및 보증금 지원(1.3억) | 6.24.(화)~8.23.(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 및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동시 체결 |
| 사업비 선 집행 | ~11.4.(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상의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자비 부담으로 선 집행 ■ 점포 계약 체결 후 해당 기간까지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미교부 |
| 사업화자금 후 지원(0.3억) | ~11.24.(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지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사업화 자금 지원 |
|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 ~12.11.(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점검 평가결과가 하위등급인 점포 대상 SOS 클리닉 상담 지원 |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 선정자는 협약체결식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7 선정자 의무사항

(협약 체결) 선정자는 선정 이후 협약을 체결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구분 | 내용 | 비고 |
|----------------|---------------------------|----|
| 협약서 | ○ 2025년 카페·베이커리 창업지원 협약체결 | |
| 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 ○ 지원사업 선정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 |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 사업유지기간 및 지원금 보증 | - |

(현판식 개최) 선정자는 선정 이후 사업장에서 현판식을 개최하여야 함

(사업체 유지) 선정자는 점포계약 종료일까지 사업을 유지해야 함

(제재 및 환수)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가 재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
-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제재·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선정자는 점포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함

(관리비용 납부) 선정자는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연 1.5%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계약 시 납부방법(선납 또는 연납)을 정하여 납부)

-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
-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관리비 납부는 계약일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

<관리비용 납부 예시>

| 지원금액 | 연 관리비(지원금액의 연 1.5%) | 계약기간 | 납부금액 총액 |
|--------|-----------------------------|------|--------------------|
| 1억3천만원 | 지원금액(1억3천만원) * 1.5% = 195만원 | 2년 | 195만원 X 2년 = 390만원 |



| | |
|----|--|
| 선납 |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의 20%(78만원) 감면한 금액 312만원 선납 |
| 연납 |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을 연 단위로 납부 (최초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급) |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 사업화 자금 정산은 업체가 요청할 경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와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 정산은 중간, 최종으로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신청 가능
- 선정 대상자는 계약 체결 후 익일부터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 및 소멸함
-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
- 선정 대상자는 점포 잔급 지급 후 90일 내에 사업화 자금집행 완료를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 및 소멸함
- 센터는 해당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창업사업화, 창업점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
 - * 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소멸
- 선정 대상자는 향후 센터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성과조사에 성실히 임해야함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타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혜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기타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창업점포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함

참고 1 장애인·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025년 4월 15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모두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모두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통계청 한국산업분류코드 링크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업종전환 예시>

| 분류 | 전환 전 업종 | | 전환 후 업종 | | 업종전환 인정여부 |
|------------------|-------------------|-----------------------------|-------------------|----------------------------|-------------------------------|
| | 업태 | 종목 | 업태 | 종목 | |
|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 교육 서비스업 (85)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 정보통신업 (58~63) |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857→591) 변경 |
| |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 커피전문점 (56221) |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561→562) 변경 |
| | 정보통신업 (58~63) |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 정보통신업 (58~63) |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
| 제조업 | 제조업 (10~34) | 빵류 제조업 (10602) | 제조업 (10~34) | 도시락류 제조업 (10701) | 업종전환 인정 ※세분류(1060→1070) 변경 |
| | 제조업 (10~34) |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831) | 제조업 (10~34) |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832) |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83) 동일 |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22. 4. 16.~'25. 4. 15.)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 기준 | |
|---------|-----------------------------|
| ■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 ■ 법인사업자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